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970 2022. 1. 19.(수) 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육미선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2년 1월 10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월 19일

-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육미선 의원)

가. 제안사유

O 인용법령의 명칭 및 띄어쓰기를 맞게 개정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인용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(안 제10조 제14조 제16조)
 - 「충청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→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
 - 「충청북도 포상 조례」→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
- O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
 - 이내 → 이하
 - 1회에 한하여 → 한 차례만
 - 기타의 → 그 밖의
 - 호선 → 선출
 - 관하여 필요한 → 필요한
- 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남범우)
 -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용법령 명칭과 띄어쓰기를 개정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 어를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"생략"
- 5. 토 론 요 지: "생략"
- 6. 심 사 결 과: "원안가결"
-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「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"이내"를 "이하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"1회에 한하여"를 "한 차례만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"기타의"를 "그 밖의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호선"을 "선출"로 한다.

제10조 중 "대하여는 「충청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"를 "대해서는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"로 한다.

제16조 중"「충청북도 포상 조례」"를"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"로 한다.

제17조 중 "관하여 필요한"을 "필요한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혂 했

개 정 아

제8조(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) ① (생 략)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(생략)
-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.
-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 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· 2. (생략)
 - 3.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기 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 기 어려운 경우
 - 4. 5. (생략)
- ⑥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⑥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

제8조(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)

- ① (현행과 같음)
- 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(현행과 같음)
- 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 로 하다.
 -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 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· 2. (현행과 같음)
 - 3. 위원이 사망 ·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 기 어려운 경우
 - 4. · 5. (현행과 같음)
- 을 두되,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 | 을 두되,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

혀 했

워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 워들의 동의로 선출한다.

⑦ (생략)

제10조(수당 및 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「충청북 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재정지원 등) ① (생 략)

제16조(포상) 도지사는 민주시 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「충청북도 포상 조례」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 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 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.

개 정 아

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워들의 동의로 선출한다.

⑦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수당 및 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「충청북 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재정지원 등) ① (현행 과 같음)

제16조(포상) 도지사는 민주시 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 의안의 개정 내용이 관계법령 명칭 및 띄어쓰기를 맞게 개정하고,
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변경으로 의안의 내용이
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